

2. 住宅供給에 關한 規則中 改正令(案)

建設部公告 18號

1. 改正의 主要내용 및 취지

가.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청약예금의 장기예치자 순으로 공급량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청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.

○ 현행규정상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만 경과하면 동일수위가 되므로 장기예치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200만호 주택건설을 대량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예금 장기예치자 순으로 청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.

나. 135㎡를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소유의 경우에도 청약1순위에서 제외.

○ 민영주택의 청약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택의 소유자가 집을 늘려 갈 수 있

는 기회도 부여하여야 하나 135㎡를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집을 늘려야 하는 사유보다는 가수요성향이 강하므로 주택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약 1순위에서 제외

다. 재당첨제한대상의 확대

○ 현행규정상 재당첨제한대상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시·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하므로써 가수요 등을 예방하고자 함.

라. 도심지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도규칙 적용대상에서 제외

○ 현행 규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은 규칙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도심지재개발사업은 명문규정이 없는 바 도심지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도 공급규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써 주거용도

가 포함된 도심지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의견제출

이 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 세워서 작

성)를 건설부장관(참조: 주택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전화 503-7362)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·주소